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2. 12. 17.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12. 17.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 12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편성사유

- 세입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조정분 및 지방채,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반영 등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고
-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분·기관운영 등 필수경상비, 보조금집행잔액반환,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기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과목조정, 당초 예산편성 시 미반영 예산 확보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4.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

-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997억 2,540만 6천원보다 9억 7,225만 9천원이 감액된 987억 5,31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그 중 일반회계 기정 예산 968억 2,954만 5천원보다 10억 274만 5천원 감액된 958억 2,68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액 28억 9,586만 1천원보다 3,048만 6천원 증액된 29억 2,634만 7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5. 세입세출예산

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안	증 감		비 고
			증액	감액	
합 계	98,753,147	99,725,406	30,486	△1,002,745	△972,259
일반회계	95,826,800	96,829,545		△1,002,745	
특별회계	2,926,347	2,895,861	30,486		

나.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958억 2,68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95억 3,372만원 보다 36억 8,657만 9천원이 증액된 232억 6,02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 기정예산액 431억 2,578만 2천원 보다 63억 1,732만 4천원 감액된 368억 845만 8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1) 세입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5,826,800	100.00	96,829,545	100.00	△1,002,745	△1%
세 입	지방세 수입	15,026,000	15.68	15,026,000	15.52		
	세 외 수 입	17,594,043	18.36	17,594,043	18.17		
	지방 교부세	2,050,000	2.13	1,550,000	1.6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260,299	24.27	19,533,720	20.17		
	보 조 금	36,808,458	38.41	43,125,782	44.54		
	지 방 채	1,088,000	1.13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95,826,800	100.00	96,829,545	100.00	△1,002,745	△1%
세 출	일 반 행 정	29,208,228	30.48	27,716,435	28.62		
	사 회 개 발	47,373,116	49.43	49,976,523	51.61		
	경 제 개 발	17,354,259	18.11	17,271,009	17.84		
	민 방 위 비	101,033	0.10	114,433	0.12		
	지원및기타경비	1,790,164	1.86	1,751,145	1.81		

3)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비고
운 영	의 회 사 무 국	1,148,490	1,148,490	-	
기 획 총 무	기 획 감 사 실	13,963,567	13,922,531	41,036	
	정보홍보담당관	979,520	784,843	194,677	
	총 무 과	6,141,314	5,527,590	613,724	
	주 민 자 치 과	1,639,645	5,000,631	△3,360,986	
	지 방 세 과	335,716	332,965	2,751	
	경 영 회 계 과	1,419,518	669,518	750,000	
	민 원 봉 사 과	449,431	284,131	165,300	
	보 건 소	3,308,104	3,351,563	△43,459	
	문예시설관리사업소	1,048,407	875,889	172,518	
	등 예 산	5,962,410	5,959,110	3,300	
소 계		35,247,632	36,708,771	△1,461,139	
사 회 도 시	사 회 복 지 과	30,134,622	30,659,324	△524,702	
	환 경 관 리 과	94,118	94,118	-	
	청 소 위 생 과	11,593,281	10,542,801	1,050,480	
	경 제 과	3,803,264	3,422,946	380,318	
	도 시 개 발 과	4,798,623	6,345,717	△1,547,094	
	교 통 과	102,577	102,577	-	
	건 설 과	8,870,069	7,775,699	1,094,370	
	건 축 과	34,124	29,102	5,022	
소 계		59,430,678	58,972,284	458,394	
총 계		95,826,800	96,829,545	△1,002,745	

4) 일반 회계 세입예산 자원별 편성(안)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02년도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 △ 감 (A-B)	비 고
합 계	95,826,800	96,829,545	△1,002,745	
□ 자 체 재 원	54,716,525	51,412,693	3,303,832	
○ 지방세수입	15,026,000	15,026,000	-	
○ 세외수입	17,594,043	17,594,043	-	
○ 자원조정교부금	20,429,000	18,373,000	2,056,000	교부금 증액분
○ 재정보전금	1,178,579	-	1,178,579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
○ 보조금(인건비)지원	488,903	419,650	69,25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40명)
□ 자 체 재 원	4,110,275	45,416,852	-	
○ 보조금	36,808,458	42,706,132	-	
· 국 고 보조금	23,714,496	29,602,693	-	국민체육센터사업 연기 등
· 시 비 보조금	13,093,962	13,103,439	-	
○ 지방교부세	2,050,000	1,550,000	-	
○ 자원조정특별교부금	1,652,720	1,160,720	-	9건(성립전 6, 미집행 3)
○ 지방채	1,088,000	-	△1,088,000	

6.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단위 : 천원)

회 계 별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수 정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소 계	95,234,926			95,234,926
	운영위원회	1,148,490			1,148,490
	기획총무위원회	35,258,132			35,258,132
	사회도시위원회	58,828,304			58,828,304
특별회계					
합	계	98,161,273			98,161,273

7.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 121조 제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는 추경사유의 타당성 여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추경요건에의 부합여부, 추경시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은 건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7억 2,540만 6천원보다 9억 7,225만 9천원이 감액된 987억 5,31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기정예산 968억 2,954만 5천원보다 10억 274만 5천원 감액된 958억 2,68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액 28억 9,586만 1천원보다 3,048만 6천원 증액된 29억 2,634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표1>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 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안	증 감		비 고
			증액	감액	
합	98,753,147	99,725,406	30,486	△1,002,745	△972,259
일반회계	95,826,800	96,829,545		△1,002,745	
특별회계	2,926,347	2,895,861	30,486		

◇ 세출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적립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예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재해대책기금 미적립분(97-99년도) 1억 9,600만원 2002년도분 재난관리기금 2,451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미적립분(98-99년도) 2,304만 4천원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총 3억 4,159만 9천원 예산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추경 요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요예산전액을 본예산에 우선해서 적립금 편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료1> : 법정적립기금 조성현황

년도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실제적립액	적립비율(%)	법정적립액	실제정립액	적립비율(%)
합계	540	246	45.0	114	66	58.0
2002	98	-	0.0	25	-	0.0
2001	96	96	100.0	24	24	100.0
2000	90	90	100.0	22	22	100.0
1999	86	30	34.0	21	20	96.0
1998	86	30	34.0	22	-	0.0
1997	84	-	0.0			

◇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명시이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지출경비의 재원은 지방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써 명시이월행위를 하는 당해연도 내에 수입될 것이 확실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의한 세출예산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4항에서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3건 37억 1,231만 4천원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추가로 확보되었고,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북동(원마북) 마을회관건립 등 사업계획변경과 대상사업 선정지연으로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어 대상사업 선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다음 연도 이월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첫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 효과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둘째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므로 해서 시급을 요하는 투자사업이 지연되므로 사업 수혜대상인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심층분석과 정확하게 계획 수립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심사결과 : 원안가결